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9년 9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고,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정주여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군계획시설 중 전시시설, 국제회의시설 결정기준 마련(안 제10조의2)

나.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(제19조의3, 안 별표 27)

- 발전시설을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과 창고시설을 완화대상에서 제외

다. 특정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개정(제19조의4, 안 별표 28)

- 도로와의 이격거리 신설(500미터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설치 시 완화 기준 마련

※ 특정건축물 : 자원순환관련시설(나목부터 마목까지만 해당한다) 및 제26호 묘지관련시설(라목만 해당한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규제심사 : 원안가결[기획감사실-7741(2019.8.2.)]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개선사항 없음[가족지원과-30312(2019.7.26.)]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 (예고기간 : '19.8.8. ~ 8.28.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)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97조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일반주거지역,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,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.

별표 27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(다만,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은 제외한다)

별표 27 제3호다목(종전의 나목) 중 “건축물 위 또는 조성”을 “조성”으로 한다.

별표 28 제1호가목을 나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도로법」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, 군도 및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.

별표 28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일조, 통풍,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발행위허가 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제19조의3 및 별표 27 제3호나목의 단서조항 규정은 2019.12.31.까지 「건축법」에 따라 사용승인이 완료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다른 지침의 폐지) 「성주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」<성주군 훈령 제425호(제정 2017.3.16.)>은 폐지한다.

[별표 28]

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(제19조의4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·지구·구역의 경계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.

가. 영 제31조에 따라 결정·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.

비고

1) "특정 건축물"이란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(나목부터 마목까지만 해당한다) 및 제26호 묘지관련시설(라목만 해당한다)의 건축물을 말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의2(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) <신 설>	제10조의2(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)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제97조제3호에 따라 설치하는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일반주거지역,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나,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.

[별표 27] <신설 2018.12.27.>

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(제19조의3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·지구·구역의 경계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.
가. 「도로법」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, 군도 및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.
나. 영 제31조에 따라 결정·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(10호 이상의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.
다.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도 문화재, 「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
라. 법 제30조에 따라 결정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
마. 발전시설 대상지의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(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)로 하며, 입목축적은 성주군 평균 입목축적의 120퍼센트 이하일 것
바.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저수지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
사. 자연의 보전, 국가 중요시설의 보호, 지역의 역사성, 그 밖에 공익차원의 자연경관 보존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시설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거리기준에 1,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3. 군수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, 통풍,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.
가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
나.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(다만,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

관련 시설 및 제18호의 창고시설은 제외한다)
다.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
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거리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(제1분과)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.
가. 발전시설이 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주요도로,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차폐가 되어 경관 상 저해가 없는 등 피해가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
나.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

주
1) “완성된 대지” 란 절토나 성토행위 없이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목이 대·공장용지·학교용지·주차장·주유소용지·창고용지인 대지를 말한다.

[별표 28] <신설 2019.4.18.>

특정 건축물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(제19조의4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·지구·구역의 경계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.
가. 「도로법」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, 일반국도, 지방도, 군도 및 「농어촌도로 정비법」 제2조에 따른 2차선 이상 포장된 농어촌도로에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.
나. 영 제31조에 따라 결정·고시된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. 다만, 10호 미만의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200미터를 이격한 후 주택수당 30미터를 더한 거리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.
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일조, 통풍,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비고
1) "특정 건축물"이란,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(나목부터 마목까지만 해당한다) 및 제26호 묘지관련시설(라목만 해당한다)의 건축물을 말한다.